

KRESG Proxy Voting Guideline

# 한국 ESG 연구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2014.11.24.  
개정 2016.01.29.  
개정 2016.09.23.  
개정 2017.02.14.  
개정 2020.11.12.  
개정 2022.01.28  
개정 2023.06.01.  
개정 2024.02.20.

# 목차

<b>총칙</b>		7
<b>I. 주주총회 일반</b>	<b>1. 의결권 일반</b>	8
	1.1. 안건의 일괄 상정	
	1.2. 주주제안	
	1.3. 의결권 행사 방향	
	1.4. 주주총회 안건의 사전공시	
	1.5. 지속가능경영	
<b>II. 재무제표 및 배당 승인</b>	<b>1. 재무제표 승인</b>	9
	1.1. 재무제표의 승인	
	<b>2. 배당 승인</b>	9
	2.1. 배당 정책	
	2.2. 배당금 지급 수준	
	2.3. 현물배당	
<b>III. 정관 변경</b>	<b>1. 총칙</b>	10
	1.1. 사업목적의 추가·변경	
	<b>2. 주식</b>	10
	2.1. 발행예정주식총수	
	2.2. 비례적 주식분할·병합	
	2.3. 차등감자	
2.4. 종류주식의 발행		
2.5. 주주의 신주인수권 제한		

<p><b>3. 사채</b></p> <p>3.1. 특수사채</p> <p>3.2. 주권관련사채의 우선매수권</p> <p>3.3. 발행 대상과 한도</p>	<p>11</p>
<p><b>4. 주주총회</b></p> <p>4.1. 결의 권한 주체의 변경</p> <p>4.2. 주주총회 결의요건 변경</p> <p>4.3.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p>	<p>11</p>
<p><b>5. 이사 및 이사회</b></p> <p>5.1. 집중투표제</p> <p>5.2. 사외이사의 임기</p> <p>5.3.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p> <p>5.4.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p> <p>5.5. 이사회 규모 및 구성 변경</p> <p>5.6. 집행임원제도</p> <p>5.7. 이사회 의장</p> <p>5.8. 이사회회의 소집</p> <p>5.9.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p>	<p>12</p>
<p><b>6. 감사 및 감사위원회</b></p> <p>6.1. 감사위원회 설치</p>	<p>13</p>
<p><b>7. 계산</b></p> <p>7.1. 재무제표 및 배당 승인 권한 주체</p> <p>7.2. 중간·분기배당</p>	<p>13</p>

<b>IV. 임원 선임</b>	<b>1. 이사</b>	13
	1.1. 이사 후보 요건	
	1.2. 성별 구성에 관한 법령 위반 1.3.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b>2. 사외이사</b>	14
	2.1. 사외이사 후보 요건	
	2.2. 사외이사 독립성 기준 2.3. 사외이사 전문성 기준	
	<b>3.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b>	15
	3.1. 감사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요건	
	3.2. 감사의 상근 여부	
<b>V. 임원 보수</b>	<b>1. 이사 보수</b>	16
	1.1. 이사의 보수한도	
	1.2. 보수와 경영성과	
	1.3. 성과보수의 지급 기준	
	1.4.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	
	1.5. 성과보수의 환수	
	1.6. 성과보수와 보수 정책	
	<b>2. 감사 보수</b>	16
	2.1. 감사의 보수한도	
	<b>VI. 주식매수선택권 부여</b>	<b>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b>
1.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2. 사외이사 및 감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p><b>VII.</b> 임원 퇴직보상금</p>	<p><b>1. 임원 퇴직보상금</b> 17</p> <p>1.1. 퇴직보상금</p>
<p><b>VIII.</b> 기업구조 개편</p>	<p><b>1. 기업구조 개편</b> 18</p> <p>1.1. 인수합병</p> <p>1.2. 차입매수</p> <p>1.3. 분할 및 분할합병</p> <p>1.4. 지주회사 설립</p> <p>1.5. 영업양도 · 양수</p>
<p><b>IX.</b> 기타</p>	<p><b>1. 자본금 감소</b> 19</p> <p>1.1. 자본금 감소</p> <hr/> <p><b>2. 상장폐지</b> 19</p> <p>2.1. 자진 상장폐지</p> <p>2.2. 조건부 상장폐지</p>

## 총 칙

### 제 1 조 (제정의 목적)

'한국ESG연구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이하 KRESG 가이드라인)'은 의결권 자문사로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지원하고, 상장회사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구축과 장기적인 기업가치 극대화에 기여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

'KRESG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에 따라 의결권 행사 기준을 정한다.

-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주주가치의 균형
- 국내 경영 환경 고려
- 연구소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 제 3 조 (선관주의의무)

'KRESG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상정 안건의 정당성 및 결의 결과가 주주가치, 기업가치,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판단한다.

### 제 4 조 (의안분석 결과의 게시)

한국ESG연구소는 의안분석 보고서를 해당 기업의 주주총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게시일을 변경하거나 결과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 5 조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KRESG 가이드라인'은 국내 법령 및 제도의 변경을 고려하여 연 1회 정기 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 제 6 조 (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최대주주"란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5 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 ② "특수관계인"이란 「상법」 시행령 제 34 조 제 4 항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③ "주요주주"란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6 호의 주요주주를 말한다.
- ④ "임원"이란 이사, 감사 및 「상법」 상 집행임원을 말한다.
- ⑤ "계열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1 호, 제 12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I

**주주총회 일반**

**1. 의결권 일반**

**1.1. (안건의 일괄 상정)**

주주총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 안건의 개별상정에 찬성하고, 일괄상정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되 안건 내의 개별 안건 모두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

**1.2. (주주제안)**

- ① 「상법」 제 363 조의 2 및 같은 법 제 542 조의 6 에 의한 주주의 권리 행사로 상정된 안건의 경우, 상정된 안건의 정당성 및 결의 결과가 주주가치, 기업가치,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판단한다.
- ② 주주제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회사의 안건 상정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대한다.

**1.3. (의결권 행사 방향)**

사안별로 검토하여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건에 찬성하고, 반대로 주주권익을 약화시키는 안건에 반대한다.

**1.4. (주주총회 안건의 사전공시)**

주주총회 안건 세부사항이 주주총회 전에 공시되지 않은 경우 반대한다.

**1.5. (지속가능경영)**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안건에 대하여는 주주가치, 책임투자 타당성, 수탁자책임활동 및 기타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한다.



## II 재무제표 및 배당 승인

### 1. 재무제표 승인

#### 1.1. (재무제표의 승인)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 이외의 의견일 경우에는 재무제표 승인 안에 반대한다.

### 2. 배당 승인

#### 2.1. (배당 정책)

회사가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당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여 공개하고, 이러한 배당 정책에 의해 배당을 지급하는 안에 찬성한다.

#### 2.2. (배당금 지급 수준)

회사의 이익규모, 현금흐름, 투자기회, 부채비율, 배당가능이익 등 재무상황, 동종업계 배당수준, 배당지급이력,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규모, 총주주환원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당금 지급 수준이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 또는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 2.3. (현물배당)

금전 외의 재산으로 현물배당하는 경우 현물의 시장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대한다.

III

정관 변경

1. 총칙

1.1. (사업목적의 추가 · 변경)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없는 사업 목적을 추가·변경하여 주주가치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반대한다.

2. 주식

2.1. (발행예정주식총수)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안에 대하여 그 목적이 다음과 같은 경우 찬성한다.

-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비하려는 목적인 경우
- 구조조정 및 재무개선을 위한 경우 또는 상장폐지 등 경영상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증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2. (비례적 주식분할 · 병합)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비례적으로 발행예정주식총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도록 변경하는 경우 찬성한다.

2.3. (차등감자)

발행주식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식병합 안에 대하여는 대주주가 경영 부실의 책임을 지기 위해 이에 동의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

2.4. (종류주식의 발행)

회사의 자금 조달 방식의 다양화를 꾀하는 동시에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발행은 찬성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대한다.

-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특정주주의 이익만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 보통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종류주식의 발행 한도를 과다하게 설정하여 기존 주주의 권리를 과다하게 희석하는 경우
-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정관에 경과조치를 두어 기발행된 주식의 수를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경우

### 2.5. (주주의 신주인수권 제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

-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여야 할 정도로 시급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방식으로는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 발행수량의 규모, 발행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기존주주의 주식이 가치 및 회사의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 3. 사채

### 3.1. (특수사채)

-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권관련사채와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는 명칭 여하 불문하고 사채 발행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반대한다.
- ② 정관에 경과조치를 두어 기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반대한다. 다만, 기발행된 특수사채에 의한 기존 주주의 과도한 권리 희석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

### 3.2. (주권관련사채의 우선매수권)

- ① 주권관련사채 발행 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 특정 주주 또는 제 3자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대한다.
- ② 특정 주주 또는 제 3자에 대하여 주권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III.2.5. (주주의 신주인수권 제한)'을 준용한다.

### 3.3. (발행 대상과 한도)

사채의 발행 대상과 한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하는 경우 반대한다.

## 4. 주주총회

### 4.1. (결의 권한 주체의 변경)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변경하는 경우 주주보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 반대한다.

### 4.2. (주주총회 결의요건 변경)

- ①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변경하는 안건은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반대한다.
- ②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대하여 초다수결의제(超多數決議制)를 도입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반대한다.

### 4.3.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도모해 다양한 주주 참여를 지원하도록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 5. 이사 및 이사회

### 5.1. (집중투표제)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반대한다.

### 5.2. (사외이사의 임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외이사의 임기를 단축 또는 연장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안에 반대한다.

### 5.3.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상법」 제 400 조 제 2 항에 따라 같은 법 제 399 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감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

### 5.4.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이사가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 시 과도한 규모의 퇴직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경우 반대한다.

### 5.5. (이사회 규모 및 구성 변경)

- ①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이 제한되거나 개별 이사의 영향력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이사회 규모 및 구성 변경 안에 반대한다.
- ②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외이사의 비중을 축소하는 경우 반대한다.
- ③ 다양한 성별(性別),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들을 선임하는 등 이사회 다양성을 제고하는 안에 찬성하고, 다양한 구성에 반하는 안의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반대한다.

### 5.6. (집행임원제도)

이사회의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그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찬성한다.

### 5.7. (이사회 의장)

- ① 고위경영자(CEO 등)와 이사회 의장의 직책을 분리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 ②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 5.8.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 소집 통지 기한을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나치게 단축하는 경우 반대한다.

### 5.9.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 ①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가 이사회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찬성한다.
- ② 「상법」 상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의무가 없는 회사가 해당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 찬성한다.
- ③ 이미 설치된 이사회 내 위원회를 폐지하는 경우 이사회의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

## 6. 감사 및 감사위원회

### 6.1. (감사위원회 설치)

- ① 상근감사 선임 의무가 없는 회사가 「상법」 제 415 조의 2 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같은 법 제 409 조 제 2 항의 의결권 제한을 회피하기 위함인 경우에는 반대한다.
- ② 「상법」 제 542 조의 10 에 따라 상근감사를 둔 회사가 같은 법 제 542 조의 11 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7. 계산

### 7.1. (재무제표 및 배당 승인 권한 주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무제표 및 배당 승인을 이사회에서 결의하도록 하는 경우 반대한다.

### 7.2. (중간·분기배당)

중간·분기배당을 도입하는 경우 찬성한다.

## IV 임원 선임

### 1. 이사

#### 1.1. (이사 후보 요건)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 횡령, 배임 등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현저한 기업가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고 그 제재가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주주 전체의 이익이 아닌 특정 주주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경우
-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분식회계의 책임이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평균 이사회 참석률이 75% 미만인 경우
- 기타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거나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 1.2. (성별 구성에 관한 법령 위반)

성별 구성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20 적용을 받는 회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이사회 의장 또는 사외이사(또는 임원)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의 이사 재선임을 반대한다.

### 1.3.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최고경영자 경영 승계와 관련된 담당조직, 내부규정, 후보군 선정 및 교육, 비상시 선임 절차 등을 포함하는 합리적인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의한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될 이사 선임 안에 찬성한다.

## 2. 사외이사

### 2.1. (사외이사 후보 요건)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 'IV.1.1. (이사 후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IV.2.2. (사외이사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회사 외에 2 개 이상의 회사에서 이사 · 집행임원 · 감사로 재직 중인 경우
-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 외의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중인 경우
- 기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2. (사외이사 독립성 기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 해당 회사, 계열회사, 기업총수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이하 '해당회사 등'이라 한다) 의 상근임직원이거나 최근 5 년 이내에 해당 회사 등의 상근임직원이었던 자
-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 최근 3 년 이내에 해당 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법률 · 경영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이해관계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3 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 해당회사에서 6 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 년을 초과한 경우
- 금융회사 사외이사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6 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임하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임한 기간을 합산하여 9 년 이상인 경우

### 2.3. (사외이사 전문성 기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 전문경영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0년 이상 동종 업계에 종사한 자
-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인정한 자

## 3.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 3.1.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요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가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독립성 또는 전문성의 한계가 있는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임에 반대한다.

- 사외이사의 선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이 재직하는 동안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한 용역 보수 중 회계감사 이외의 다른 경영 컨설팅 비용 등 과도한 비감사 용역 보수로 인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이 재직하는 동안 법령 또는 행정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2. (감사의 상근 여부)

상근감사 후보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경우 당해회사에서 상근감사로서의 충실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V

임원 보수

1. 이사 보수

1.1. (이사의 보수한도)

이사의 보수한도 및 보수금액이 과다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찬성한다. 다만,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대할 수 있다.

- 이사의 보수한도 및 보수금액 수준이 경영 성과 및 기업규모 대비 과다한 경우
- 업종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당기 보수 실지금액이 차기 보수한도에 크게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차기 보수한도를 인상하는 경우
- 총주주이익률이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한도를 인상하는 경우
- 이사회 내 이사 인원수의 변동에 따른 보수한도 수준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1.2. (보수와 경영성과)

성과에 연동하지 않는 이사의 보수에 반대한다. 단, 신규 이사의 경우 사안별로 판단한다.

1.3. (성과보수의 지급 기준)

이사에 대한 성과 연동형 보수 안에 대해서는 동종 업계, 시장 상황 등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

1.4. (성과보수의 이연 지급)

이사에 대한 성과 연동형 보수를 이연 지급하는 안에 찬성한다.

1.5. (성과보수의 환수)

이사에 대한 성과 연동형 보수가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 왜곡된 성과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안에 찬성한다.

1.6. (성과보수와 보수 정책)

이사 개인별 보수를 성과에 연동하고, 보수 산정 기준과 지급 근거, 방법 등을 포함하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보수 정책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안에 찬성한다.

2. 감사 보수

2.1. (감사의 보수한도)

감사의 보수한도 안에 대해서는 감사 인원의 증감, 실지금액, 다른 임·직원 평균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과다하지 않은 경우 찬성한다.



## VI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1.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반대한다.

- 연간 발행물량이 발행주식총수 대비 3% 초과
-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 유보기간을 단축

#### 1.2. (사외이사 및 감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사외이사 및 감사에게 보수의 일부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 VII 임원 퇴직보상금

### 1. 임원 퇴직보상금

#### 1.1. (퇴직보상금)

- ① 임원에게 퇴직보상금을 지급할 때 재직 중 경영실적, 회사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다하지 않은 경우 찬성한다.
- ② 퇴직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권한을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반대한다.

**VIII**

**기업구조 개편**

**1. 기업구조 개편**

**1.1. (인수합병)**

인수합병 안건은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반대한다.

- 특정인의 사적 이익 추구 여부
- 회사의 전망과 향후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
- 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과 배치 여부
- 인수 가격과 비율, 절차의 공정성 및 정보공개의 적정성
- 시장 반응과 사회적 영향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등 기타 불공정 행위 개입 여부

**1.2. (차입매수)**

차입매수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에 의한 인수합병은 법률적 타당성, 적격요건 충족여부, 가치평가, 이해상충,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검토한다.

**1.3. (분할 및 분할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안건은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반대한다.

- 특정인의 사적 이익 추구 여부
- 분할 비율, 절차의 공정성 및 정보공개의 적정성
- 잔존 회사의 사업 지속성, 성장성, 수익성
- 분할신설 및 분할합병회사의 사업 지속성, 성장성, 수익성
- 주주의 지위 및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등 기타 불공정 행위 개입 여부

**1.4. (지주회사 설립)**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가를 제고할 수 있는 지주회사 설립이나 전환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사안별로 검토한다.

**1.5. (영업양도·양수)**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중요한 영업양도·양수에 반대한다.

## IX 기타

### 1. 자본금 감소

#### 1.1. (자본금 감소)

자본금 감소의 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

- 기업 회생, 구조조정 절차 등의 일환으로 자본금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후 주주 가치에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불가피한 경우
-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다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없이 반복적으로 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 경영진의 경영부실 책임을 묻기 위한 차등 자본금 감소의 경우
- 자본금 적정화와 주주 가치 환원을 위한 유상 감자의 경우
-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자본금 감소로 주주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상장폐지

#### 2.1. (자진 상장폐지)

자진 상장폐지를 결의하는 안에 대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대한다.

-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소액주주 보호절차가 미흡한 경우
- 자진 상장폐지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
- 불합리한 공개매수 가격, 주식교환가격으로 인해 주주에게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2. (조건부 상장폐지)

소속시장 변경을 위한 조건부 상장폐지의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소속시장의 인지도, 이전 상장의 상대적 장점 등을 검토하여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찬성한다.

**Compliance Notice**

본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자료는 한국 ESG 연구소에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신뢰할 만한 자료와 정보를 사용하여 작성한 자료로 주주의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의 편의를 위하여 단순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본 자료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강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를 참조하여 실행한 주주총회의 결의 결과에 대하여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본 자료를 어느 주주총회와 관련한 분쟁에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라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